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 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라·계부·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1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낮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19	17	14	13
2인가구	22	19	15	14
3인가구	26	23	18	17
4인가구	30	27	21	19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지급
고등학생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6·9·12월)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별첨2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 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④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 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 이행기 보장 :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